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기기 MRA 전망

A Perspective 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f IT Equipment Consistent
with Trade Environment Changes

백종현 (J.H. Paik)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연구원
임광선 (K.W. Lim)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이진우 (J.W. Lee)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연구원

목 차

-
- I. 서론
 - II. 상호인정협정(MRA)의 개요
 - III. 주요 해외 국가의 MRA
추진 형태 및 체결현황
 - IV. 향후 정보통신기기 MRA의 전망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 서론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과 체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1]. 그리고 최근에는 이의 이행수단으로 비관세 장벽(NTB)의 일환인 기술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적 수준에 조화(harmonization) 또는 동등화(equivalence)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2],[3]. 특히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관점에 의한 “세계 무역의 확대”, “공정한 교역기회의 보장” 입장과 일맥 상통한다.

WTO 체제 이전에 각국들은 산업제품에 대하여 자국 고유의 기술규제나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도 자국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이러한 기술규제장벽에 의한 국내 시장 보호조치는 세계 무역환경의 개방화, 자유화 경향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WTO 체제에서 기술장벽에 의한 무역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들은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폐지하고 국제 표준에 기술규제를 정합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4],[5].

본 고에서 살펴볼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술규제를 적용 받는 시험, 인

증절차를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 정부의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락하는 일련의 협정 활동이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주요국가별 동향을 살펴보고, 국제적 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추진해야 하는 MRA 방향에 대하여 전망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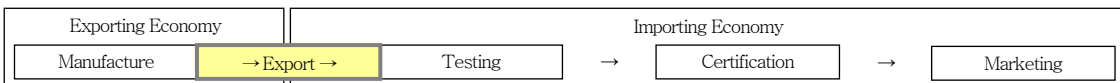
II. 상호인정협정(MRA)의 개요

1. MRA의 의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또는 Agreement)이란 국가가 국민의 안전, 통신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자국 기술규정에 따라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정보통신기기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양 당사국의 승인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6].

이러한 상호인정협정은 제품의 시험 및 인증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 및 인증 처리에 드는 유, 무형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7],[8]. 즉, 상호인정협정 시행 전에는 수입국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상호인정협정 이후에는 수출국에서 받은 수입국 기준에 따라 행한 시험과 인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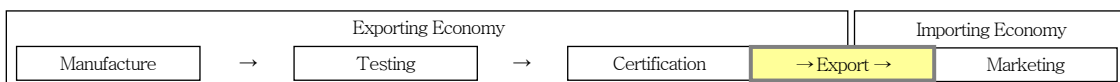
- MRA 시행 전: 수입국에서 시험 및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수출



- MRA 1단계 시행 후: 수출국 시험기관이 수입국 기준에 의하여 행한 시험결과를 수입국이 인정



- MRA 2단계 시행 후: 수출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결과를 수입국이 인정



<자료>: Andrew Kwan, “APEC Telecom MRA,” APEC HRD MRA Workshop, Taipei 발표자료, Oct. 4-5, 2003.

(그림 1) 정보통신기기 MRA 시행 전후의 변화

를 수입국 기관이 채택해 줌으로써 수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지연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정보통신기기 MRA 시행 전후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9].

전통적인 의미의 MRA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으나, 새로운 형태의 MRA에서는 수입국 정부가 수출국의 승인기관에게 인증서 발급 혹은 인증마크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양국간 시험 인증의 기준이 되는 기술규정을 일치화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MRA가 “낮은 단계에서의 기술규제 적용절차에 대한 국제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새로운 MRA는 “높은 단계에서의 기술규제의 동등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MRA 추진에 따른 일반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는 우선 IT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험 또는 인증을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해외 기반이 잘 갖춰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그 효과가 크다. MRA 체결 전에는 제조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관련 시험 또는 인증을 현지의 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MRA의 체결 범위에 따라서 시험 또는 인증을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1],[7]. 다만 MRA 추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계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는 기업 내부 비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기간 단축에 따른 시간 절감 효과의 비용 추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두번째 긍정적인 효과로는 국가간 MRA 수입국가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규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국간 MRA의 체결은 양국 시험, 인증제도가 동등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시험, 인증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은 상호 공개되며, 절차와 제도가 상

이한 경우에는 양국 공동으로 국제기준에 정합케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 양국 규제기관이 시험 인증과 관련하여 자의적 규제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불필요한 기술 무역장벽을 둘 가능성은 점차 축소되게 된다. 세번째 긍정적인 효과로는 협정국들의 시험인증체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MRA를 체결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정국들은 자국 시험, 인증제도를 국제 표준화의 흐름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MRA를 이행하는 시험, 인증기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가속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출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 보호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MRA 체결 전에는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 시험, 인증기관에 그 기관이 요구하는 제품 적용 규격, 관련 설제도, 시험 방법 등을 명시한 시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수입국 시험인증기관이 기술기반이 없는 자국 경쟁기업에 제공한다면 수출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기술정보가 송두리째 노출되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MRA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험, 인증 등은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품의 기술정보 누출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나. 부정적 효과

부정적인 효과로는 우선 MRA 체결국가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의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MRA는 수출과 관련된 규제제도의 간소화를 협정의 목적으로 삼는 바 그 수혜대상 역시 수출기업이다. 따라서 협정 일방 당사국이 교역상 절대적 수출 우위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 당사국 국가 제품 역시 MRA를 통해 제품의 시장접근가능성을 크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MRA 추진 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대국 제조기업들의 잠재적 시장기회만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MRA 체결국가에서 시험, 인증을 한 제품의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MRA에 따른 시험,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표 1〉 정보통신기기 MRA에 따른 주요 주체별 이해관계

주체	이해관계	
	이익	손실
산업계	수출중심 •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
	내수중심	- • 시장잠식에 따른 경쟁 심화
시험기관	• 해외 시험인증 전문기관 기반증대	• 내수 중심 시험인증 기관은 시험건수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와 해외기관과의 경쟁심화
소비자(국민)	• 소비자의 제품선택권 확대	• 불량제품 유통시 피해 발생우려
정부	• MRA 및 인증제도의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화 및 개선에 따른 시험, 인증기관의 선진화	•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추진에 따른 부담

것은 MRA 업무를 수행기로 승인된 수출국 시험 인증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수입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제품의 적정품질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해당 제품 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게 되며, 이러한 부실 시험, 인증을 한 기관에 대하여는 수입국 규제기관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MRA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적 조치인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내수 중심의 시험, 인증시험기관들의 존립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해외의 시험, 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MRA에 따른 시장확대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나, 내수 중심의 시험, 인증기관들은 국내 시험, 인증건수의 감소, 해외 기관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표 1〉은 정보통신기기 MRA에 따른 주요 주체별 이해관계를 분석해 본 것이다.

Ⅲ. 주요 해외 국가의 MRA 추진 형태 및 체결현황

1. 주요국가별 MRA 추진 형태

주요 해외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MRA는 개별

국가간 단독 MRA, APEC TEL 등 다자간 MRA, 양자간 FTA에 포함되는 MRA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 개별 국가간 단독 MRA

이는 FTA 혹은 다자간 MRA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국가들이 상호 교역상 이해가 부합하는 단독 또는 다수분야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 간에 협력증진을 꾀하거나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을 내용으로 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1990년대 후반에 체결한 “전기안전, EMC, 전기통신기기, 레이저 선박, 의약품 제조공정(GMP), 의료용기기” 분야에 대한 MRA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자간 MRA 또는 FTA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MRA 추진이 가능하나 개별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국가별 MRA 형식, 범위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며 MRA 대상제품 및 범위 등을 확대코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재협상을 해야 하는 등 시간 및 비용의 소요가 크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별 국가간 MRA 보다는 APEC TEL 등 다자간 MRA에 참여하여 그 틀을 이용하거나, 양자간 FTA에서 MRA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향을 띤다.

나. APEC TEL 등 다자간 MRA

이는 지역경제협력체 내의 다수 회원국들간에 공통의 협정문을 만들고 동일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간

시험 또는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다자간 MRA로서는 APEC TEL MRA, 아세안 국가들간의 MRA,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간 MRA인 CITELE MRA 등이 있다. 다자간 MRA는 해당 MRA에 참여를 선언한 것만으로 모든 회원국들간에 MRA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양자간 서신교환 등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MRA는 참여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MRA의 형식, 범위들이 결정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회원국 양자간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표준 모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단독 MRA와 같이 MRA 외의 협상요인이 없는 까닭에 신속한 MRA 추진과 협상 양국 모두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PEC TEL MRA 참여가 강제력이 없으므로 MRA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서신교환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다자간 MRA 방식을 이용하여 양자 MRA를 체결한 사례로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베트남, 미국과 싱가포르, 미국과 홍콩, 미국과 캐나다 등이 있다.

다. FTA 내에서의 MRA

FTA 하에서의 MRA는 FTA 내에 MRA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경우이다. 이는 FTA 협상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FTA 분야 중 기술장벽, 표준관련조치(standard related measure) 부분에서 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FTA의 일환인 일본-싱가포르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의 사례와 같이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FTA 내에 별도의 MRA 장을 신설하여 MRA 대상 제품, 범위, 절차, 관련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초기 FTA에서는 MRA에 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협정을 그대로 준용 또는 일부 변형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1990년 후반 이후 체결된 주요국가의 FTA에서 품목별 MRA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

다. 또한 이러한 FTA 하에서 MRA에 관한 내용은 ① WTO TBT 협정을 준용 또는 변형하는 형태(1990년대 초중반 대부분의 FTA) ② 주요 품목별 MRA를 직접 채택하는 형태(일본-싱가포르) ③ 기술표준,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선언하는 형태(유럽연합-칠레 등)로 나타나고 있다[10].

이러한 FTA 내에서 MRA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경우 FTA 체결의 효력이 MRA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정 체결 결과에 강제 구속력을 가지며 MRA 이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FTA는 체결 단계에서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MRA 이외의 협상요인에 의해 FTA 자체의 국회 비준 지연 또는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 MRA 추진이 지연되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일 정보통신기기 MRA의 경우 MRA 이외 FTA에서의 다른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됨으로써, MRA 논의 역시 중단된 사례가 있다.

2. 주요국가들의 MRA 체결 현황

앞서 살펴본 유형에 따라서 주요국가들이 체결한 정보통신기기 MRA는 개별국가간 단독 MRA에 포함된 경우, APEC TEL 등 다자간 협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자간 체결한 경우, FTA에 포함하여 체결한 경우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MRA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 인증기관의 요건, 지정 및 인정절차, 시험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분쟁해결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 범위는 시험결과 또는 인증결과의 상호인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국가별 MRA 체결 현황은 <표 2>와 같다.

3. 한국과 주요국간의 MRA 체결 현황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MRA는 캐나다이며, 이후 관련 적합성 평가기관의 경험축적과 기타 국가들과의 MRA 추진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외국과의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대한 MRA의 논의는 1998년 APEC TEL MR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APEC TEL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산업

분야별 MRA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APEC TEL 차원에서의 논의가 MRA의 실질적 체결을 위한 분야별 협상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의 FTA에서 논의되는 MRA는 MRA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

〈표 2〉 주요국가들의 MRA 추진현황

구분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	칠레	한국
미국		◎	◎	○		◎	◎	○	◎			○
EU	◎		◎	○	◎	◎						
일본	◎	◎					◎					
호주	○	○				○	○	○	○			
뉴질랜드		◎										
캐나다	◎	◎		○			○	○	○			○
싱가포르	◎		◎	○		○		○	○			
대만	○			○		○	○		○			
홍콩	◎			○		○	○	○				
베트남												○
칠레												
한국	○					○				○		

- 주 1) ○: 1단계(시험결과인정), ◎: 2단계(인증결과 인정)
 2) 호주는 제조자 적합확인제도(SDoC) 채택국가로 APEC TEL MRA 1단계만 가능
 3) 미국과 일본은 2006년 상반기에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체결 예정임
 4)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APEC TEL MRA 2단계 참여국으로 개별 국가와 협상 결과에 따라 MRA 시행단계와 시기를 결정

〈표 3〉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와의 MRA 논의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1월 한-캐나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체결(18개월 신뢰구축기간) 1998년 7월 시험성적상 상호인정 실시 2001년 10월 APEC TEL MRA 방식으로 전환, 시행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미국측 제안으로 양국 MRA 논의 시작 2004년 한-미 MRA 실무협상 시작 2005년 한-미 MRA 1단계(유무선통신 기기분야) 체결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12월 한-싱 FTA 협상 시작 2004년 10월 한-싱 FTA 타결 - FTA Annex에서 MRA는 APEC TEL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 2005년 9월 싱가포르, 한국 지정시험기관 방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3월 AGENDA 21에서 MRA 추진 합의 통신기기의 경우는 APEC TEL MRA로 대체하기로 합의 2004년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 시작, 현재 잠정 중단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합의 2000년 5월 통신기기 MRA를 포함하기로 합의 2004년 4월 한-칠레 FTA에 포함 - APEC TEL MRA 1단계 방식을 고려함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0월 APEC TEL MRA 1단계 추진에 합의 2005년 정보교환 및 상호방문을 통한 실무사항 협의 2006년 1월 MRA 1단계(적합성 평가기관 상호 인정) 체결

주) 2005년 2월 현재 한국과 주요국가와의 정보통신기기분야 MRA 협상결과를 토대로 작성

〈표 4〉 2006년도 주요국가별 MRA 논의 전망

구분	주요국가	주요전망
FTA/MRA	ASEAN	FTA 타결. MRA는 협력수준에서 검토
	일본	FTA 협상 재개일정에 따라 논의
	캐나다	FTA 협상 진행중 - 정보통신기기 MRA 확대 여부 검토
	멕시코	FTA 협상 진행중 - 정보통신기기 MRA는 협력수준에서 검토
	인도	외교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검토
	싱가포르	FTA에서 APEC TEL MRA 방식의 1, 2단계 추진합의 - 추진합의에 따른 대상기기, 범위 등 논의
APEC TEL MRA	미국	APEC TEL MRA 1단계 시행
	베트남	APEC TEL MRA 1단계 체결, 세부 이행절차 논의
	중국	산-관-학 공동연구결과, 제조업체, 시험기관 등 입장 고려 검토

으로 다루기보다는 우선 FTA 내에서 MRA 추진 원칙 및 방식을 개괄적으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추진은 APEC TEL의 MRA를 준용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표 3〉은 그간의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와의 MRA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11].

한편 2006년에는 FTA 내의 MRA와 APEC TEL 방식을 활용한 MRA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FTA 내에서의 MRA 논의는 국가별 협상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싱가포르와는 2004년도에 FTA 내에서 APEC TEL MRA를 활용하여 MR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MRA의 대상,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며, 캐나다와는 FTA 협상결과에 따라 APEC TEL MRA의 확대여부가, 2006년 1월 MRA를 체결한 베트남과는 MRA 1단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2006년도 주요 FTA 협상 국가와 APEC TEL MRA 참여국가와의 MRA 논의 전망을 제시해 본 것이다.

IV. 향후 정보통신기기 MRA의 전망

최근 정보통신기기 MRA는 개별 국가별 MRA에서 다자간 MRA, FTA 내의 MRA로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MRA는 전기

용품, 의료기기 등 대상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 국가간 MRA는 우선 낮은 단계에서는 지역 경제공동체 국가들의 비관세-기술장벽을 철폐하고 협정을 맺은 국가간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보급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며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시험, 인증 절차뿐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국가별 기술규제의 조화와 통합하는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 경제블록 간 “하나의 제품(one product) 하나의 표준(one standard)”의 등장이 가시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06년 APEC TEL 제33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APEC TEL MRA 이외 협정국가들의 동일 제품 표준의 동등성 확보, 신기술 혹은 국제표준 채택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의 조화 또는 일치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12].

정보통신기기 MRA는 최근의 IT 기술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선진국 혹은 경쟁국가, 개발도상국의 국가의 기술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MRA의 범위가 기술규제의 조화 또는 일치로까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이에 따른 주요 규제사항이 지역 공동체에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 중심의 기술 무역환경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정보통신기기 MRA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관-연-학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약어 정리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NTB	Non Tariff Barrier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용어해설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적합성. 전자 기기는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해를 제한하여 다른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그 때문에 전자파 방사를 극도로 억제하거나 전자파 방해에 대한 내성(耐性)을 과다하게 설계하는 것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자파 기술자 협회(IRE)가 1963년에 제안한 개념으로, 전자파 환경 공학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국가가 국민의 안전 및 기타 정책적 이유로 자국 제품별 기술규정에 따라 자국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상대국 승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협정이다. 정보통신기기, 의료용 제품, 전기용품 등 적합성 평가대상이 되는 품목은 본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한국무역협회, “2005년 전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2006.
- [2] EU,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 1999.
- [3] Rudi Bekkers Jan Smits, Mobile Telecommunication; Standard, Regulation, and Applications, Artech House, 1999, pp.64-68.
- [4] 백중현, 이봉락 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제의 성격과 변화양상 고찰, 한국통신학회 하계 학술대회, 2004.
- [5] 백중현, 임광선, 정보통신 MRA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추계 학술대회, 2003.
- [6]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PEC Publication Number: APEC#202-TC-01.1, 1998.
- [7] 강병구,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정보통신기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제19집, 2001, pp.1-26.
- [8] 김희동, 김명진, “기술장벽협정과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정의 국제동향,”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Vol.2, No.2, 1998, pp.47-65.
- [9] Andrew Kwan, “APEC Telecom MRA,” APEC HRD MRA Workshop, Taipei 발표자료, Oct. 4-5, 2003.
- [10] 백중현, 이용규, 정보통신분야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간 전략분석, 국제지역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5.
- [11] 최계영 외,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상호인증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관련 국제협력(MRA)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12] APEC TEL(2000-2005), 각년도 MRA TF Meeting Reports